

분담유량 수령 보고서

문서번호

년 월 일

수 신 해양수산부장관

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
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(단위: M/T)

수령 사유	합 계	원 유	제 품 유	기 타
합 계				
수 입				
연안 수송				
기 타				

주 소:

(전화번호:)

상 호:

대표자: (서명 또는 날인)

※ 작성요령:

유류수령인이 둘 이상일 경우 합계량을 총괄하여 작성하되, 각 유류수령인
의 수령량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